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추가 〉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249호)

2024.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전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0조 및 제19조)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6. 10.

다. 회 부 일 : 2024. 6.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인수위 내 인수위원 외 여러 직책이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지낸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당선자 임명직인 고문·자문 등도 자격 제한 요건에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송통신위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했으면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공무원도 결격사유에 포함했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0조 및 제19조).

Ⅲ. 검토의견

1.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추가 (안 제10조 및 제19조)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상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 구체적으로 개정안에서 추가하는 방통위원 및 방심위원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음.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11조의 소관사무¹⁾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 5. (생략)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u>위원</u> 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u>아니한</u> 사람 <신설> <신설>	제10조(결격사유) ① ----- ----- -----. 1. ~ 5. (현행과 같음) 6. ----- ----- <u>위원</u> , <u>전문위원</u> 의----- ----- <u>아니하였거나</u> <u>대통령직</u> <u>인수와 관련된 자문이나 고문 등의</u> <u>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u> <u>한</u> ----- 7.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u>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u> <u>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8. 제11조의 위원회 소관사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한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에 관한 사항
2. 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인터넷 윤리,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u>사람의</u>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략) 제19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1. ~ 5. (생략)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u>위원</u>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u>아니한</u> 사람 <신설> <신설>	<u>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② -----<u>사람, 같은 항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위원회 소관사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한 정무직공무원의</u>-----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u>위원, 전문위원의</u>----- -----<u>아니하였거나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u>----- 7.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u>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8. 제21조의 심의위원회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한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나 목에 따른 정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현 행	개 정 안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u>사람의</u>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 <u>사람, 같은</u> <u>항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자문이</u> <u>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 및 같은</u> <u>항 제8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직무와</u> <u>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한</u> <u>정무직공무원의</u> ----- -----.

나. 검토 의견

- 법 제10조제1항은 방통위원의 결격사유를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통위원의 결격사유는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6가지임.²⁾

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2.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 제10조제1항제1호 「정당법」 제22조³⁾에 따른 당원
- 제10조제1항제2호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 제10조제1항제3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제10조제1항제4호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 제10조제1항제5호 「공직선거법」 제2조⁵⁾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10조제2항제6호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⁶⁾에 따른

-
- 3)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또한, 법 제19조제1항은 방심위원의 결격사유를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통위원의 결격사유는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6가지임.⁷⁾

- 방통위원과 다르게 방심위원 중 탄핵 대상이 없기 때문에 “탄핵 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이 제외되었고, 제1호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이나 「법원조직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대법관 또는 판사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추가되어 있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이나 「법원조직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대법관 또는 판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3.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현행법상 규정된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19조제1항제4호의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는 공직자가 될 수 없는 최소한의 사유를 규정한 것에 해당하고, 나머지 「정당법」에 따른 당원(제10조제1항제1호·제19조제1항제2호),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제10조제1항제2호·제19조제1항제3호) 등의 결격사유는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 및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 특히 결격사유 중에서도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0조제1항제5호·제19조제1항제5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0조제1항제6호·제19조제1항제6호)은 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편향성을 방지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5년 2월에 추가된 것임.⁸⁾
- 개정안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자문, 고문 등의 역할을 한 사람,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사람, 방송통신 위원회의 소관사무(방심위원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한 정무직 공무원 등이 해당

8) 【제정·개정이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보장을 위해서는 주요 방송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들 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서 정파성을 배제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있어서 그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중략)

신분을 상실한 지 3년 안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은 합의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그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자문고문 등의 역할을 한 사람,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사람,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방심위원의 경우 방심위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한 정무직 공무원 등은 대통령과 동일한 정치적 지향점 혹은 정책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결격사유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동일한 취지로 제21대에 발의되었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3846)」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신중검토 필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자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는 공무담임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독립성이 요구되는 타 입법사례(인권위, 권익위 등)에도 이 같은 결격사유가 없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신중검토 필요 의견임.

- 종합해보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중검토 필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조항 >

구분	위원의 결격사유 조항
국민권익위원회	제15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금융위원회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직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국가인권 위원회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	제9조(위원의 해임사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의 요구가 있거나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와 국회의원선거권이 없음이 발견된 때 5.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에 달하였을 때
감사원	제8조(신분보장)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2. 장기(長期)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문 의 처
02)6788-5226